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38074 등록면허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476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54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08,000,000원, 2013. 3. 15.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48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96,000,000원, 2013. 6. 11.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면허세 4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 등을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한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정하였던 등록면허세의 면제 범위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81조로 제정되면서 제2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다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면서 제2항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인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제정 등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구 지방세법이 2011. 1. 1.자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누어 정리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에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그 등기원인에 관한 제한 없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되 일정 시한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을 완전히 다르게 규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제목에서 '이전공공기관등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문 체계상 이 사건 조항 제1항과 제2항의 취지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의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 역시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 조문의 제목이 그 조문의 전체적인 뜻과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법률 조문이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조문의 제목이 그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조문의 전체적인 뜻과 범위에 일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사건 조항의 제목인 '이전공공기관등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을 반드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당해 등기비용'만을 감면하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등에 따르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공공기관의 각종 등기비용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포함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 12. 27.자로 개정되면서 제81조 제1항이 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7

되었는데, 위 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제14조가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를 정하면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까지 종전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규정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 12. 27.자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4조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부칙의 규정이 종전의 규정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이외의 '이전공공기관등의 기타 등기비용'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